

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석학교수" 라 함은 노벨상수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 업적이나 산학협력실적이 탁월한 자로서 본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을 말한다.</p> <p>2. "방문교원"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3. "특임교수"라 함은 <u>특정분야에서 높은 명망을 갖춘 자로서</u> 대학에서 부여하는 특정업무 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4. "대우교원"이라 함은 특정한 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5. "연구교원"이라 함은 본 대학 학과(학부)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6. "기금교원"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<u>각 직위의</u>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7."겸직교수"라 함은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타기관에 소속된 인사로서 본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8. "겸임교수"라 함은 대학내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본 대학 전임교원을 타학과(부설연구소) 또는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동시에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.</p> <p>9. "시간강사"라 함은 교과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과목의 강의를 일정기간 담당하도록 대학에서 위촉한 외부인사를 말한다.</p> <p>10. "산학협력전담교수"라 함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본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을 말한다.</p>	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방문교수"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<u>각 직위의</u>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3. "특임교수"라 함은 <u>특정분야에서 높은 사회적 명망을 갖춘 자와 본교 전임교원 재직 중 학과특임교수로 임명되어 정년퇴직 하는 자로서</u> 대학에서 부여하는 특정업무 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4. "대우교수"라 함은 특정한 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5. "연구교수"라 함은 본 대학 학과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6. "기금교수"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"산학협력중점교수"라 함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본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	<p>산학협력전담교수 명칭 변경</p>

<p>제 3 조(임용절차) ① <u>해당학과 주임교수(연구소장)는 석학교수, 특임교수, 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수</u> 임용 대상자의 교육 및 연구실적과 학과에의 기여도를 종합 검토하여 관련 <u>학과 인사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제 5 조 제 2 항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목적, 기간, <u>임무(교육 및 연구)</u>, 임용조건 등을 활용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연구교원</u>의 임용자격은 본 대학 전임교원의 각 직위별 자격기준에 준한다.</p> <p>② <u>겸직교수는 해당학과(연구소) 주임교수(연구소장)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, 이 경우 주임교수는 학과인사위원회 회의록, 대상자의 이력서, 소속기관장의 겸직임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겸임교수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와 겸임학과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임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④ 시간강사는 학과주임교수가 교과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교과목 및 강의시간, 주당강의 시수 등을 확정하여 시간강사의 위촉을 추천하면, 총장이 위촉임명하며 그 자격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⑤ 본 대학소속 비전임교원은 산학협력단 소속을 겸한다.</p>	<p>제 3 조(임용절차) ① <u>주임교수(부속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)는 비전임교원</u> 임용 대상자의 교육·연구실적과 <u>학과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의</u> 기여도를 종합 검토하여 <u>학과 인사위원회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</u>의 심의를 거쳐 <u>추천 서류</u>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목적, 기간, <u>임무(교육·연구·봉사)</u>, 임용조건 등을 활용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방문·대우·연구교수</u>의 임용자격은 본 대학 전임교원의 각 직위별 자격기준에 준한다.</p> <p>② <u>대외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에 따라 타기관에 소속된 인사를 방문·겸직교수로 임용할 경우 총장은 임용절차를 따로 정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당초겸직교수 임용절차는 1 항과 통합.</p> <p>대외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방문·겸직교수 임용절차 신설</p>
<p>제 3 조의 2(<u>연구교원</u>의 승진임용절차) <u>연구교원</u>의 승진 임용은 각 직위의 <u>연구교원</u> 승진 대상자가 제출한 업적요약서에 대한 소속 <u>학과(학부) 또는 대학원 인사위원회</u>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</p>	<p>제 3 조의 2(<u>방문·대우·연구교수</u>의 승진임용절차) <u>방문·대우·연구교수</u>의 승진 임용은 승진 대상자가 제출한 업적요약서에 대한 <u>학과 인사위원회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</u>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</p>	
<p>제 4 조(임용기간)</p> <p>① <u>석학교수, 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수</u>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<u>특임교수</u>의 임용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<u>겸직교수</u>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학과주임교수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<u>소속기관의 임용이 종료된 경우 겸직교원의 임용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제 4 조(개별계약의 원칙 및 임용기간)</p> <p>① <u>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석학·특임·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·산학협력중점교수</u>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 <u>다만, 학과특임교수 운영세칙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학과특임교수로 임명되어 정년퇴직 후 특임교수로 임용되는 자의 임용기간은 학과특임교수 임명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겸직교수</u>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<u>소속기관의 임용이 종료된 경우 겸직교수의 임용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개별계약 원칙 신설</p>

<p>③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와 겸임학과 주임교수 추천에 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소속학과의 임용이 종료된 경우 겸임교수의 임용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	<p>③~④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	
<p>제 5 조(추천시기 및 제출서류) ① 석학교수, 특임교수, 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교원의 임용추천시기는 임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석학교수, 특임교수, 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 교원으로 임용추천시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주임교수추천서(연구소인 경우 연구소장의 추천서와 주임교수 추천서)</p> <p>2. 학과인사위원회 회의록</p> <p>3. 활용계획서 및 급여재원내역</p> <p>4. 방문희망신청서 또는 일시초빙수락서(해당자에 한함)</p> <p>5. 이력서</p> <p>6. 소속기관장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</p> <p>③ 임용이 승인된 외국 국적 소지자는 법무부 제출용 최종학위증명서 사본 1부를 임용구비서류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5 조(추천시기 및 제출서류)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추천 시기는 임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비전임교원의 임용 시 제출서류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</p> <p>1~6 삭제</p> <p>③ (삭제)</p>	
<p>제 6 조(방문교원 및 대우교원의 처우) ① 방문교원 및 대우교원의 보수는 학력과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단, 교비로 지원하는 대우교원의 임용 및 처우기준은 따로 정한다.</p> <p>②,③ 삭제</p> <p>④ 방문·대우 교원은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. 다만, 주임교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학과 전임교원과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 6 조(방문 및 대우교수의 처우) ① 방문 및 대우교수의 처우는 학력과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단, 교비로 지원하는 대우교수의 임용 및 처우기준은 따로 정한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방문 및 대우교수는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. 다만, 주임교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학과 전임교원과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
<p>제 6 조의 3(특임교수의 처우)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 6 조의 3(특임교수의 처우)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본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학과특임교수로 임명되어 정년퇴직 후 특임교수로 임용되는 자의 처우는 학과특임교수 운영세칙을 따른다.</p>	

<p>제 7 조(겸직교수의 처우)</p> <p>① 겸직교수는 <u>비전임으로서</u>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<u>직급별 구분은 두지 않는다.</u></p> <p>② 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겸직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간강사료에 준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겸직교수는 본 대학에서 단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으나 전임교원의 공동 연구원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</p> <p>④ 겸직교수는 일반대학원에 소속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. 단, 주임교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학과 전임교원과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 7 조(겸직교수의 처우)</p> <p>① 겸직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, <u>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③,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기존 2항 내용을 1항에 포함</p>
<p>제 8 조의 2(연구 및 기금교원의 처우) ① <u>연구교원의 보수는 교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.</u></p> <p>② <u>기금교원</u>의 보수는 해당기금에서 지출하며 기금재원이 소진되었을 경우, <u>기금교원</u>의 임용도 종료된다.</p> <p>③ <u>연구 및 기금교원</u>은 원칙적으로 학생논문을 지도할 수 없다. 단,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수와 공동으로 학생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 8 조의 2(연구 및 기금교수의 처우) ① <u>연구교수</u>의 보수는 본인 또는 소속 학과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의 연구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, <u>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<u>기금교수</u>의 보수는 해당기금에서 지출하며 기금재원이 소진되었을 경우, <u>기금교수</u>의 임용도 종료된다.</p> <p>③ <u>연구 및 기금교수</u>는 원칙적으로 학생논문을 지도할 수 없다. 단,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수와 공동으로 학생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</p>	
<p>제 8 조의 3(산학협력전담교수의 자격 및 처우) ① <u>산학협력전담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</u></p> <p>2. <u>박사학위 소지자</u></p> <p>② <u>산학협력전담교수</u>의 보수는 ~ (생략)</p> <p>③ <u>산학협력전담교수</u>는 산학협력업무에 전담하되, 필요에 따라 본교 강의와 학위논문 공동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 8 조의 3(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자격 및 처우) ① <u>산학협력중점교수</u>는 산학협력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 및 연계를 위하여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담당 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정부부처에서 인정하는 경력 및 학위·자격증 소지자는 그 인정기간을 산업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1~2 (삭제)</p> <p>② <u>산학협력중점교수</u>의 보수는 ~ (생략)</p> <p>③ <u>산학협력중점교수</u>는 ~ (생략)</p>	
<p>제 10 조(기타 지원사항) <u>석학교수, 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수에 관한 기타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숙소는 대학의 주거배정기준에 <u>의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제공할 수 있으며, 월사용료와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</p>	<p>제 10 조(기타 지원사항) <u>비전임교원의 기타 지원사항은 개별계약에 따르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숙소는 대학의 주거배정기준에 <u>따라</u> 제공할 수 있으며, 월사용료와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</p>	

<p>2. 부임경비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초빙의 경우 본인의 왕복 항공료는 대학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3. 의료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전임교원에 준한다.</p> <p>4. 국제 및 시외통화료는 본인이 부담하며,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공용전화 통화료는 대학에서 부담한다.</p> <p>5. 연구실은 주임교수 재량으로 배정하며, 출장비등 기타경비는 연구비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6. 숙소사용에 대한 월사용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7.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사회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p> <p>4,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~7(삭제)</p>	<p>기존 7호의 내용을 3호와 통합</p>
<p>제 11 조(강의시간의 제한) ① 겸직교원 및 산학협력전담교수는 주당 6 시간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.</p> <p>② 겸임교원은 소속학과 및 겸임학과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여야 한다. 단, 겸임학과의 강의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삭제</p> <p>④ 시간강사는 주당 9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연구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</p>	<p>제 11 조(강의시간의 제한) ① 겸직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주당 6 시간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.</p> <p>② 겸임교수는 ~ (생략)</p> <p>③,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연구교수는 ~ (생략)</p>	